

[별지 제15호서식] <개정 2010.2.18>

※제 호				
자동차처리명령서				
소유자	상호(명칭)			
	주소	(전화번호 : )		
자동차	등록번호		차대번호	
	차종		차명	
	방치된장소			
	보관된장소			
명령사항		년 월 일까지 위 자동차를 자진회수 또는 폐차조치		
<p>「자동차관리법」 제26조제2항·동법시행령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자동차의 자진처리를 명령하오니 지정된 기한내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 [인]</p> <p>○자동차 방치행위자에 대하여는 법 제26조제1항 및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이 부과되며,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 제81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 또한,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동차를 강제폐차 또는 매각 조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.</p>				

210mm×297mm

(일반용지 60g/m<sup>2</sup>(재활용품))